

보도참고자료 금융위원회 8감독원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17.8.14.(화) 윤 덕 기 사무관 (02-2100-2835)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 이 은 진 사무관 책 임 자 담 당 자 (02-2100-2836)금감원 은행감독국장 홍 석 린 팀장 민 병 진(02-3145-8020) (02-3145-8040)

제 목 : 매일경제 8.15일자 가판 「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 · 일산에선 적용안돼」제하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□ 매일경제는 8.15일자 가판 「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・일산에선 적용안돼」제하의 기사에서
- ○"따라서 성남·하남·고양·남양주·광명·화성 일부·부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 이하,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민·실수요자로 분류돼 각각 70%와 60%의 LTV·DTI가 적용된다."라고 보도

< 참고 내용 >

- □ 투기지역・투기과열지구의 서민・실수요자 소득요건과 조정 대상지역의 서민・실수요자 소득요건이 상이한 것은
 -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의 기본 LTV, DTI 비율과 조정대상지역의 LTV, DTI 비율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임
- □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LTV 40%, DTI 40%가 적용되며, 서민·실수요자는 10%p 추가된 LTV 50%, DTI 50%가 적용됨

- 이에 반해,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보다 완화된 LTV 60%, DTI 50%를 적용받게 되며, 서민·실 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, LTV 70%, DTI 60%를 적용받게 됨
- < 강화된 지역별 LTV. DTI 규제비율 (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) >

구 분	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		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	
	LTV	DTI	LTV	DTI
서민 실수요자 (완화)	<mark>50%</mark>	<mark>50%</mark>	<mark>70%</mark>	<mark>60%</mark>
주 담 대 미보유 세대 (기본)	40%	40%	60%	50%

- 따라서, 조정대상지역의 소득요건을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, LTV 70%, DTI 60%가 적용되는 고부담대출*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
- * LTV 또는 DTI가 60%를 초과하는 대출(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2조제8호)
- 또한, 투기지역과 비교하여 서민·실수요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의 소득 6~7천만원 차주는 LTV를 60%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의 투기지역 차주(50%)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 바,
 - 보다 엄격한 실수요자 기준 적용으로 **상대적 불이익이 발생** 한다고 볼 수 없음
- □ 따라서, 기본적으로 LTV, DTI 비율이 엄격한 투기지역·투기 과열지구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되,
- 기본 LTV, DTI 비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에는 다소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